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5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서영교·권칠승·박희승

이해식 • 이연희 • 박홍배

김종민 • 안호영 • 강유정

허 영 · 윤준병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 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.

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·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, 경기침체기에 근로소득자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.

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 함(안 제50조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150만원을"을 "200만원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0조(기본공제) ① 종합소득이	제50조(기본공제) ①		
있는 거주자(자연인만 해당한			
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			
수에 1명당 연 <u>150만원을</u> 곱하	<u>200</u> 만원을		
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			
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			
에서 공제한다.	.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